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옥재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5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발 의 자: 옥재은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원중,
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도문열, 민병주,
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
윤종복, 이봉준, 이상욱,
이종환, 최민규, 허·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개별 사업구역의 시행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기반시설의 계획적인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사업 구역별 시행단계에 맞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전에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할 수 있게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미리 부담시키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해당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하게 함(안 제19조제3항)
- 나.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한 현금은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에만 사용토록 함(안 제19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이 법 제27조제5항에 갈음하여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부담시키려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시금고 또는 해당 자치구의 구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한 현금은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제19조(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)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한 것 등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